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89
----------	-------

제출년월일 : 2019. 0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지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안 제4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1) 위탁기관 모집방법 및 위탁기간 등

2)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운영지원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제한(안 제9조)

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안 제10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법무팀 의견]

관 계 법 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팀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특이사항	타 자치구 제정 현황 : 서울시 23개구 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의무
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
4. 타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
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
6. 수탁운영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관리·감독)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사업)

(2)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조(운영 위탁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시비 50%, 구비50%)

나.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다. 비용추계기간 : 2019. 1. ~ 2023.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이후 계속)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354,765	363,634	372,725	382,043	391,594	1,864,761
	구비 보조금	354,765	363,634	372,725	382,043	391,594	1,864,761
	소계(b)	709,530	727,268	745,450	764,086	783,188	3,729,522
□ 총 비용(a-b)		709,530	727,268	745,450	764,086	783,188	3,729,522

※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분(연도별 소요예산의 2.5%)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가. 시비 50% 지원과 구비 50% 확보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보건소 의약과 오계은 (☎9042)